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 박용진 · 용혜인 · 아쥬비

정필모 · 윤재갑 · 이탄희

강준현 · 조오섭 · 어기구

이용선 • 박영순 • 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 및 운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뿐 만 아니라 이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소수주주의 권리보장 논의 등이 모두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그런데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기업 간 경쟁을 과열시켰고, 이에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기업지배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진단하고 있음. 또한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

당에 인색하고 이는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도 내놓고 있음. 하지만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 및 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 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종전에 회사의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집중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안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
- 나.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 요건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통제를 꾀함(안 제383조 및 제385조).
- 다. 주주가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분식회계에 관여

한 경우 등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사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 주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사가 주주가 제안한 이사해임·직무정지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385조의2 및 제635조제1항제21호).

- 라.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소제기 청구를 받고 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표소송의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소송이 계속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며, 대표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의 소송참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보완·개선하여 대표소송을 활성화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 마. 자(子)회사의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활성화하여 이사의 책임 경영을 꾀함(안 제406조의2 및 제542조의6제6항).
- 바.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 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며,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 사.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적어도 1 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임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 조의12).
- 아.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 중 "第400條와 第403條 乃至 第406條"를 "제400조,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382조의2제1항 중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 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으로 한다.

제383조제2항 중 "3年"을 "1년"으로 한다.

제385조제1항 본문 중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5조의2(부적격이사 해임 등에 대한 요구)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지시를 고의로 위반 하거나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사가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 사 기소된 경우
- 3. 이사의 임기 중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4. 자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인 경우
- 5. 그 밖에 이사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394조제1항 후단 중 "第403條第1項"을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 의2제1항"으로 한다.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99條·第401條 및 第403條"를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403조제3항 중 "있다"를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1.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합병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40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03조 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 다.

제408조의9 중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415조 중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를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로 한다.

제424조의2제2항 중 "第403條 내지 第406條"를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467조의2제4항 중 "第403條 내지 第406條"를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542조제2항 중 "第398條 乃至 第408條"를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542조의6제6항 중 "제403조(제324조"를 "제403조 및 제406조의2(제3 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2조의8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또는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본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각 1인 이상의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 서 각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중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 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사외이사 를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외이사인 감사위 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제21호 중 "제542조제2항"을 "제385조의2, 제54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을 "과반수 및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지 않도록"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제542조의12제5항"으로 한다.

30의2. 제542조의12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3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이사의 해임에 대한 적용례) 제3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4조(부적격이사 해임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3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제5조(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적용례) 제542조의8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第324條(發起人의 責任免除, 株主 | 第324條(發起人의 責任免除, 株主 의 代表訴訟) 第400條와 第403 의 代表訴訟) 제400조, 제403조 條 乃至 第406條의 規定은 發 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 起人에 準用한다. 의2----. 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2人이상 | 第382條의2(集中投票) ① ------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 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 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이상에 <u>식을 가진</u> 주주는-----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 中投票의 방법으로 理事를 選 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383條(員數, 任期) ① (생 략) 第383條(員數, 任期)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의 任期는 3年을 超過 ② -----1년-----하지 못하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第385條(解任) ① 理事는 언제는 第385條(解任) ① ------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 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할 수 있다. -----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 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 을 請求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5조의2(부적격이사 해임 등 에 대한 요구)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 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의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다음 각 호 중에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이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이사가 「형법」 제355조부

 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경우

- 3. 이사의 임기 중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 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4. 자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인 경우
- 5. 그 밖에 이사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事는 그 訴에 관하여 會社를 代表한다. 會社가 <u>第403條第1項</u> 의 請求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 다.

② (생략)

-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그 지시하거나 執 行한 業務에 관하여 <u>第399條</u>· <u>第401條 및 第403條</u>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理事로 본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② (생 략)
 - ③ 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訴를 提起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卽時 會社를 爲하여 訴 를 提起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한 株主의 保有株式이 提訴후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
② (현행과 같음)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제399조·
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②
(현행과 같음)
3
시크 뒤기노 키긔
<u>있고, 회사는 지체</u>
없이 제1항의 주주에게 소를 제
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u>통지하여야 한다</u> .
④ (현행과 같음) ⑤ 디오 가 호이 시나 됩니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미만 향이 없다. 保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提訴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

⑥·⑦ (생 략)

第404條(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 第404條(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 訟告知) ①・②(생 략) <신 설>

<신 설>

- 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1.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 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 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 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합병 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訟告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가 회사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제4 03조제3항과 제4항의 소가 제 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3 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 주는 위 소송에 참가할 수 있 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 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 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 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한다.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第415條(準用規定) ------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4 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 한 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 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본조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u>第401條와</u> <u>第403條 乃至 第407條</u>의 規定 은 監事에 準用한다.

- 第424條의2(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 (생 략)
 - ② <u>第403條 내지 第406條</u>의 規定은 第1項의 支給을 請求하는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③ (생략)
- 第467條의2(利益供與의 금지) ① ~ ③ (생 략)
 - ④ <u>第403條</u> 내지 <u>第406條</u>의 規定은 第3項의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 用한다.

第542條(準用規定) ①(생 략)

② 第362條, 第363條 의 2, 第366 條, 第367條, 第373條, 第376條, 第377條, 第382條第2項, 第386 條, 第388條 乃至 第394條, 第3 96條, <u>第398條 乃至 第408條</u>, 第411條 乃至 第413條, 第414條 第3項, 第449條第3項, 第450條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
<u>6</u> 조의2 및 제407조
第424條의2(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u>및 제406조의2</u>
③ (현행과 같음)
第467條의2(利益供與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u>및 제406조의2</u>
第542條(準用規定) ① (현행과 같
<u></u> 이
②
<u>제398조부터 제406조까</u>
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
<u>조</u>

- 와 第466條의 規定은 淸算人에 準用한다.
-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⑤ 저 (생 략)
 -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u>제403조(제324조,</u>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 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⑦ (생략)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저례) ① (생 략)
 -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네542조의6(소수주주권)		(5)
		3)
(현행과 같음)		
6		
<u>제403</u> 조	및 제4	<u>06</u>
<u> 조의2(제324조</u>		
⑦ (현행과 같음)		
⑧제6항끼	}지에서·	
세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u>있</u>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 <삭 제>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 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 략)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 ② -----

<삭 제>

(현행과 같음)

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생략)

- ③ (생 략)
-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 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 성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
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
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
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
였던 자 또는 6년 이상 사외
이사로 재직한 자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7</u>
성하되, 「근로복지기본법」에
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 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

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 는 수의 주식을 가진 본조 제2 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자 를 제외한 주주(이하 "소액주 주"라 한다) 및 우리사주조합 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회에 각 1인 이상의 사외이사 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사외 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사외이 사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선임하여야 한다(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 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이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 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

권리를	를 행기	사할·	수 있	는 요	1건	을
갖춘	주주	가 2	주주총	·회일	(정	기
주주총	총회의	경-	우 ?	직전연	토	의
정기극	주주총	회일여	에 해	당하	느	해
당 연	도의	해당	일)의	6주	전	에
추천형	한 사	외이시) 후.	보를	포	함
시켜ㅇ	나 하다	1				

<신 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저 등) ① (생 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

<u> 함시켜야 한다)</u>
⑦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
회는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주
주총회에서 각 사외이사 후보
자의 추천인을 공표하여야 한
<u>다.</u>
세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선임할 수 있</u>
<u>선임할 수 있</u> <u>다</u> . <u>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u>
<u>다</u> . <u>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u>
다. 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다. <u>다만</u> ,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다. 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 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 다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u>감사위원이 되는</u>
이사(사외이사를 제외한다)를
·
4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第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 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 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 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 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 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 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 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0. (생략)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u>한다.</u>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1. ~ 20. (현행과 같음)
21 <u>제385조</u>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

제2항또는제542조의6제2항을위반하여주주가제안한사항을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하지아니한경우22.~ 30.(생 략)22<신 설>절>

31. · 32.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 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지 <u>아니한</u> 경우

의2, 제542조제2항
22. ~ 30. (현행과 같음)
30의2. 제542조의12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
<u> </u>
31. • 3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과반수 및 우리
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
함되지 않도록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
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사외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3.	\sim	8	(생	략)
Ο.		O.	\ ()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
 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
 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u> </u>
3. ~ 8. (현행과 같음)
4
<u>.</u>
1. (현행과 같음)
2. 제542조의12제5항